남원시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시 보

선람	기관의 장

www.namwon.go.kr

제34호 2024. 6. 27(목)

규 칙

○ 남원시 규칙 제747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-----1
○ 남원시 규칙 제748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-----2

훈 령

○ 남원시 훈령 제463호 남원시 실·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-----6
○ 남원시 훈령 제464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----------7

예 규

○ 남원시 예규 제44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지침 일괄개정규정----------11

회람										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 직인

2024년 6월 27일

남원시 규칙 제 747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공포 이후에 최초로 부시장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 **직인**

2024년 6월 27일

남원시 규칙 제 748 호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자치행정국)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,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,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서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

관으로,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간호사무관으로,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간호사무관으로,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으로, 재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자치행정국)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,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 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서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간호사무관으로,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간호사무관으로,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으	제6조(자치행정국)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,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,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서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·지방보건사

현 행	개 정 안
로, 재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・지방공업사무관・지방농업사무관 ・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	무관・지방간호사무관으로,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・지방사회복지사무관・지방보건사무관・지방간호사무관으로,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・지방사회복지사무관・지방공업사무관・지방보건사무관으로, 재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・지방공업사무관・지방농업사무관・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「남원시 실·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 직인

2024년 6월 27일

남원시 훈령 제 463 호

남원시 실·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

남원시 실·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, 2, 3, 4, 5,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공포 이후에 최초로 부시장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「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 **직인**

2024년 6월 27일

남원시 훈령 제 464 호

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

제1조(「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4호 중 “만 8세”를 “8세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만 8세”를 “8세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만 60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만 0세 ~ 만 2세미만”을 “0세 ~ 2세 미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만 2세 ~ 만 6세미만”을 “2세 ~ 6세 미만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

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7호 중 “만 55세” 중 “55세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만 60세” 중 “60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남원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(「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(「남원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(「남원시사무대결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사무대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휴가 기타”를 “휴가,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남원시직무대리규칙이 정하는”을 “「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서 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”를 “제2조에도 불구하고”로 한다.

제8조(「남원시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」의 개정) 남원시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1조 본문 중 “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7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8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휴직) ① (생 략) 1. ~ 3. (생 략) 4.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5. (생 략) ② ~ ③ (생 략)	제31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8세 ----------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육아휴직) ① 소속부서의 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가진 남·녀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. ② ~ ⑤ (생 략)	제33조(육아휴직) ① ---------- 8세 -----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6조(정년)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 다만, 청원경찰의 경우에는「청원경찰법」, 환경관리원의 경우에는「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」에서 정한 정년을 준용한다. ② (생 략)	제56조(정년) ① ---------- 60세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「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지침 일괄개정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 **직인**

2024년 6월 27일

남원시 예규 제 44 호

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지침 일괄개정지침

제1조(「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」의 개정)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5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」의 개정)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 중 “만 75세”를 “75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지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과태료 감경) ①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) ② ~ ③ (생 략)	제18조(과태료 감경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-- 19세 -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 제한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~ 5. (생 략) 6. 미성년자 또는 만 75세 이상인 사람 7. ~ 8. (생 략)	제5조(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----- 75세 ---------- 7. ~ 8. (현행과 같음)